

#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정책 분석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은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외 주요국도 관련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진출기업복귀법」 및 관련 대책을 통해 국내복귀를 지원하고 있으나 국내복귀 실적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 분석결과, 국내복귀 확대를 통한 국내투자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해, 동반복귀 측면에서 강점이 있는 대기업 관련 국내복귀정책을 점검하고, 국내복귀 유도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첨단산업화·고부가가치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복귀기업 인정요건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국내투자 및 고용확대에 초점을 맞추도록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국내투자 및 고용의 양적·질적 향상을 중심으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가 국내복귀기업 선정·지원과정에서 지자체 발전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손동희 예산분석관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정책, 현황 및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향후 국내복귀기업 관련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방향을 제시

## I. 국내복귀 개념 및 추이

### 국내복귀의 개념 및 목적

#### 국내복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하고,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것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2조)

### 국내복귀정책의 궁극적인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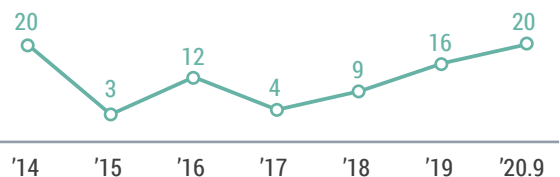
국내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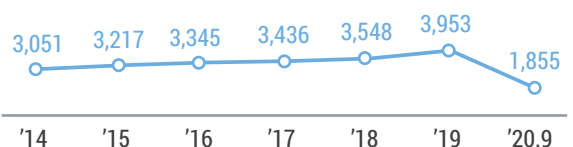
고용 확대



### 국내복귀기업 추이 ('14~'20.9) (개)



### 해외진출기업 신규법인수 추이 ('14~'20.9) (개)



\*주: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의 약어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II. 주요 현황 및 실태

### 1. 주요 정책 연혁

우리나라의 국내복귀정책은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정('13.8) 및 시행('13.12)을 통해 본격화

####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정('13.8.) 및 시행('13.12.)

**100대 국정과제 ('17.8.)**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국정과제 38번)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 ('17.8.)** 국내복귀기업 인정범위 확대, 인센티브 강화, 지원체계 간소화 및 유치활동 강화 등

####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일부개정('19.12.) 및 시행('20.3.)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6.)** 국내복귀기업 및 첨단산업 유치 등 글로벌밸류체인(GVC) 허브화를 위한 종합 패키지 도입, 첨단산업중심 R&D센터 유치전략 마련 등

**「소재·부품·장비 2.0전략」 ('20.7.)** 첨단산업유치 및 국내복귀 보조금, 인프라 구축 등에 향후 5년간 1.5조원 재정지원 계획 등

**「2021년 경제정책방향」 ('20.12.)**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국내복귀기업 중심 지원제도 개편방안 등

#### ▼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일부개정('20.12.) 및 시행('21.6.)

### 2. 주요 지원방향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감면, 보조금지원 등을 실시

구분	주요 내용		
선정 기준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축소(25% 이상 등)		
주요 지원	세제 지원	법인세	최대 7년간 50~100%의 감면 가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관세	자본재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에 대하여 50~100% 감면 가능
	보조금 지원	입지·설비 보조금	사업장당 300억원(기업당 600억원) 이내 대기업 제외). 수도권은 첨단산업만 지급 대상으로 한정하며, 사업장당 150억원(기업당 300억원) 이내
		이전 보조금	기업당 4억원 이내에서 해외사업장 이전 소요비용에 대하여 일정 비율에 따라 지급 가능
		고용창출 장려금	사업자가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는 경우, 사업자가 신규고용인원에 지급한 인건비의 80% 한도로 2년간 100명까지 지급 가능
기타 지원	외국인고용(E-7 및 E-9 비자), 구조조정컨설팅, 스마트공장, 입지, 금융, 지적재산권, 보증·보험우대, R&D 지원 등		

### 3. 주요 국내복귀 현황 및 지원실적

#### 주요 복귀 현황 ('14~'20.9)

전체 현황	기업규모별
84개	중소기업 (72개, 85.7%), 대기업 (1개, 1.2%)
주요 기존 진출국	주요 복귀 업종
중국 (71개, 84.5%), 베트남 (8개, 9.5%)	전자(17개, 20.2%), 주얼리(13개, 15.5%), 자동차(12개, 14.3%) 등

#### 주요 지원 현황

법인세	관세
15억원 ('15~'18)	3억원 ('14~'19)
투자보조금	고용창출장려금
214억원 ('14~'19)	31억원 ('15~'19)

### 4. 국내복귀 관련 주요 실태

#### 실태조사 주요 결과

##### 국내복귀 고려요인

- 내부적(국내) 요인 : 인센티브, 숙련노동력 확보 용이, 신산업 성장,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Made in Korea 효과 등
- 외부적(기존 진출국) 요인 : 현지 생산비용 상승, 낮은 생산성, 공급리스크, 규제강화 등

##### 국내복귀 미고려요인

- 현지 내수시장 진출, 국내의 높은 생산비용, 협력사로 진출, 노사·환경 등 각종 규제 등

##### 국내복귀를 위한 정책수요

- 세제감면, 보조금지원, 기술경쟁력 및 자동화설비 지원, 선정요건 완화, 규제완화, 금융 및 고용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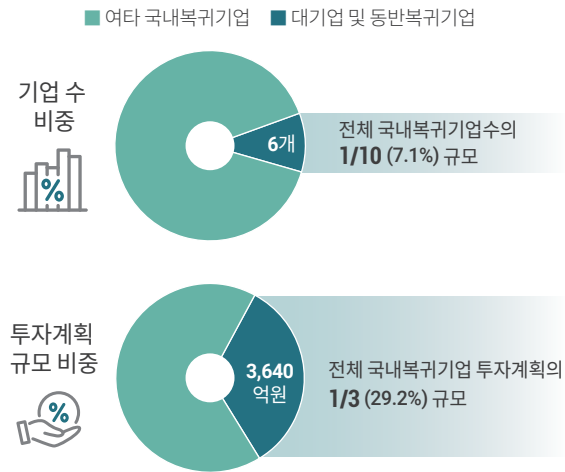
※ 실태조사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 III. 주요 정책 분석

#### 1. 대기업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방향 검토 필요

전체 국내복귀기업 84개 중 대기업은 1개에 불과  
1개 대기업 복귀시, 5개 기업 동반복귀  
6개 기업 투자계획규모는 전체 투자계획의 1/3 규모 차지

##### 전체 국내복귀기업 중 대기업 및 동반복귀기업 비중



동반복귀 측면에서 상대적인 강점이 존재하는 대기업 관련 국내복귀정책을 점검할 필요. 단, 중소·중견기업 지원과의 공정성 측면 등에서 특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2-2. 첨단산업화·고부가가치화 지원 강화 필요

첨단산업화 및 고부가가치화 관련 지원 시 관련 정책간 연계 강화 필요

첨단산업화·고부가가치화와 국내복귀 정책 간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기업복귀 성과 향상 도모

- 연계 대상 정책**
- 「산업기술혁신계획」 등 산업기술 관련 정책
  - 국내복귀기업 대다수가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등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관련 정책
  - 지역(수도권 외)으로의 복귀가 대다수 → 「지역산업진흥계획」 등 지자체 산업발전 관련 정책 등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가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추진하는 첨단산업화 지원, 지자체 산업발전 관련 정책 등에 대한 연계정보 수집 및 전달기능 강화 방안 검토 필요

#### 2-1. 첨단산업화·고부가가치화 지원 강화 필요

현지 내수시장 진출, 생산비용 절감, 협력사로 해외진출한 경우 국내복귀 유도 가능성 상대적으로 낮음  
반면, 첨단산업화·고부가가치화 지원 강화는 국내복귀 성과 확대에 대한 기여가능성 존재

##### 주요 해외진출목적에 따른 국내복귀 유도 가능성

해외진출목적	국내복귀 유도 가능성
현지내수시장 진출	지속적인 해외 판로 유지 및 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하여 국내복귀 시에도 해외 재진출 가능성
생산비용 절감	임금수준, 노동생산성 증가율 등을 고려할 때 국내보다 동남아시아로 이전할 가능성
협력사로 진출	원청기업 미복귀 시 단독으로 국내복귀 어려움

##### 주요 국내복귀 고려요인에 따른 향후 지원방향

###### 주요 국내복귀 고려요인

국내 우수인력·숙련노동 확보 용이, 기술기반 양호, 기술경쟁력 강화 및 자동화설비 지원, Made in Korea 효과, 신산업 성장,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등

고부가가치화·첨단산업화 지원 강화 필요

#### 3-1. 국내복귀기업 인정요건 완화 필요

해외진출기업복귀법 및 관련 정책이 시행되어 왔으나, 국내복귀 성과가 제한적. 코로나-19로 인해 해외공급망을 활용한 기존의 생산조달체계의 안정성 약화

재정지원, 조세지출 등 국내복귀 시 지원 → 국내복귀 인정기준을 엄밀하게 설정하여 투명하고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방향

제한적인 국내복귀 성과, 코로나-19로 인한 기존의 해외공급망 활용 벨류체인 약화

해외 주요국의 경우 자국우선주의 측면에서 국내복귀 강화를 천명

우리나라에 비해 국내복귀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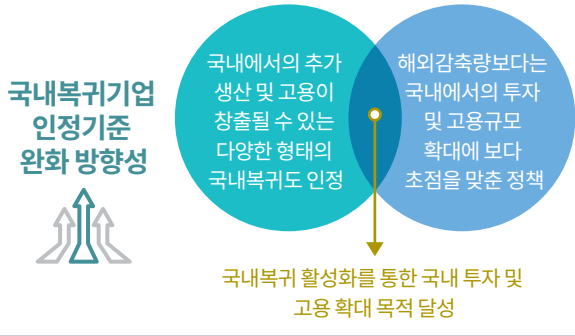
### III. 주요 정책 분석

#### 3-2. 국내복귀기업 인정요건 완화 필요

국내복귀를 보다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기업들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국내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필요

##### 해외 주요국 국내복귀 인정기준 사례

국가	국내복귀 유도 가능성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 국내사업장 간 생산량 조정(전환)</li> <li>• 해외 OEM이나 수입품의 기능을 대체하는 새로운 상품 생산</li> <li>• 해외투자계획의 취소 및 국내투자로의 전환 등을 모두 국내복귀에 포함</li> </ul>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회원국인 본국으로 이전, 비EU국가에서 EU회원국으로 이전 등</li> </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투자촉진보조금 지급 관련 해외사업 축소 및 동일제품 생산 등의 요건 없음</li> </ul>



#### 4-1. 국내복귀기업 성과관리 강화 필요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 이래로 국내복귀 관련 주요 정책에서 명확한 목표설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주요 국내복귀정책에서의 목표설정 여부

국내복귀 관련 정책	정책별 제시 목표 및 기대효과
100대 국정과제 ('1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 설정여부: 미설정</li> <li>• 기대효과: '22년까지 유턴기업 일자리 1천개 (직접고용, 누계) 창출</li> </ul>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 ('18.11./발표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 설정여부: 미설정</li> <li>• 기대효과: '22년까지 약 100개의 유턴기업이 국내로 들어와 2,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li> </ul>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1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기대효과 설정여부: 미설정</li> </ul>
소재·부품·장비 2.0전략('1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기대효과 설정여부: 미설정</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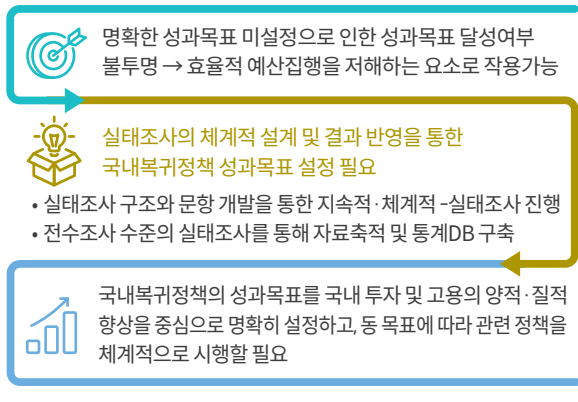
##### 국내복귀기업의 투자 및 고용 계획 규모 및 성과관리 여부

84개 국내복귀기업의 국내 투자계획은 1조 2,477억원, 고용계획은 3,242명

국내 투자·고용 계획에 대한 성과목표 및 관리방안 미흡

#### 4-2. 국내복귀기업 성과관리 강화 필요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국내투자 및 고용의 양적·질적 향상을 중심으로 성과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동 목표에 따라 관련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필요



#### 5. 국내복귀정책에서의 지자체 역할 강화 필요

지역별 주력산업과 국내복귀기업 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내복귀기업 선정·지원 과정에 지자체의 역할 강화 필요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1차('04~'08)	2차('09~'13)	3차('14~'18)	4차('18~'22)
	132조원	161조원	165조원	175+a조원

시·도별 주력산업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지역산업기반, 성장가능성, 고용창출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정

##### 해외의 국내복귀 지원경향 및 국내 정책수요

국가	주요 내용
해외(美, 日)	[중앙정부] 규제완화, 세제개편 등 정책적 측면 지원 [지방정부] 지자체 차원의 세제 감면, 보조금 지원 등
국내정책수요	지역특성을 반영한 인센티브 지원 및 선정요건 조정, 국내복귀기업 관련 정보공유 등 필요